

동호회 운영 지침

제정 2024.05.20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직원복지후생규정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동호회”란 대학 교직원들이 교양, 취미,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.
2. “주무부서”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교육지원처 총무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교직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대학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으로 한다.

제4조(주무부서 임무)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.취소 여부를 검토.승인
2.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.승인
3.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대학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

제5조(동호회 등록절차)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동호회 등록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동호회 활동계획서

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동호회 등록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, 1년 이상 동호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의해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서에 매년 2월말까지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동호회 등록 기준) ① 동호회는 교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소속부서(스쿨)에서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.

② 동호회는 특정부서(스쿨) 소속 교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③ 동호회 등록은 1인 2개 동호회까지 등록 할 수 있다.

제7조(동호회 지원기준)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.

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회원수, 회원참여도 및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활동지원금은 동호회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동호회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 심사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(별표)에 따라 지원하고 실시 결과보고서를 받는다.

제8조(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)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
2.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
3. 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
4. 제4조 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

제9조(동호회 활동계획서 제출) 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2. 계좌번호

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 지급기준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.

제10조(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) 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동호회 활동보고서(별지 제3호 서식)
2. 경비사용 영수증
3. 동호회 활동사진

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활동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활동 실적이 미비한 동호회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차기 동호회 활동지원금을 제한 할 수 있다.

③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 활동 실적 보고서 및 예산 지출에 대한 결과를 분기말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 202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

별지1호 동호회 등록 신청서

별지2호 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신청서

별지3호 동호회 활동보고서

(별표)

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

구 분	내 역	비 고
지급기준	○ 동호회 회원 5인이상 ○ 분기별 1회 지급(연간 4회)	
지원금액	○ 동호회 활동비 승인금액의 범위내(동호회 연간활동비 총액의 50%한도) - 강사료 등 교육비 우선지원 -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법인카드사용으로 대체 가능	

(별지 제1호 서식)

동호회 등록 신청서

동호회명				
활동기간	2024. . . ~ 2025. . .			
활동목적				
활동계획	활동계획에 대한 요약 * 세부활동계획의 경우 활동계획 세부내역서 별첨			
회 원 수		회 장		
		총 무		
회원명부	소속	직급	성명	비고
상기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				
2024년 월 일				
○○동호회 회장 (서명)				
첨부서류 : 동호회 활동계획서 1부				

(별지 제2호 서식)

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신청서

동호회명		행사명	
참가인원		행사장소	
일 시		지원신청금액	
☐ 행사개요 ☐ 참가자명단 ☐ 소요경비 세부산출내역 * 자체충당 및 지원경비 구분 기재			
상기와 같이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. 2024년 월 일 ○○동호회 회장 (서명)			
* 동호회 행사 참가후 동호회활동보고서(사진첨부)를 7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* 예산사정에 따라 신청경비가 조정되어 지급 될 수 있습니다.			

(별지 제3호 서식)

동호회 활동보고서

동호회명		행사명	
참가인원		행사장소	
일 시		총소요경비	- 자체충당 : - 지원경비 :
☐ 활동결과 * 활동 사진 첨부 ☐ 참가자 명단 ☐ 소요경비 세부내역 * 자체충당 및 지원경비 구분 기재			
2024년 월 일 ○○동호회 회장 (서명)			